

청년안심주택 (공공지원민간임대)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 안내

신청자격

청년안심주택(공공지원민간임대) 신규 입주예정자 중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

● 소득기준 (2024년 3월 1일 이후 접수자 기준)

- 청년 : 신청자 본인 (1인 가구)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% 이하
- 신혼부부 :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% 이하

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(원)					
유형	청년	신혼부부			
구분	1인 가구	2인 가구	3인 가구 (자녀1)	4인 가구 (자녀2)	5인 가구 (자녀3)
100%	3,482,964	-	-	-	-
120%	-	6,498,854	8,638,379	9,898,160	10,530,085

● 자산 기준

- 청년 : 신청자 본인 자산 기준 2억 7,300만원 이하
- 신혼부부 :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자산 기준 3억 4,500만원 이하

※ 위 소득 및 자산 금액은 2024년도 통계청 발표 자료 기준

지원금액

임차보증금의 30% 무이자지원 (청년 : 최대 4,500만원, 신혼부부 : 최대 6,000만원)

※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% 무이자지원 (청년 및 신혼부부 : 최대 4,500만원)

신청절차

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신청 (방문신청 시 지원 약정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)

- 신청기간 : 신규 입주(예정)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 (평일 10:00 ~ 15:00 점심시간 없이 운영)
- 신청장소 :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,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(상가동) 2층,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
☎ 문의전화: 1600-3456

제출서류

※ 모든 서류는 서면(종이) 서류로 제출

제출서류	세부내용	비고
임대차계약서 원본	※ 전자계약일 경우 전체 출력본	
신분증	※ 인정서류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(신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필수),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	신혼부부의 경우 본인·배우자 모두 제출
소득증빙서류 ①, ② 모두 필수 제출	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 건강보험 가입 현황에 따른 현재 본인의 소득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· 직장가입자 :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(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) · 피부양자·지역세대주·지역세대원 :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 (홈텍스, 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 년도 귀속분) ※ 직장가입자의 경우 현직장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확인 불가 시 (ex : 현직장 입사 3개월 미만인 경우) 근로계약서 (사본) 등 추가 증빙 서류 필수 제출 ※ 기간설정 : 발급일 현재부터 2년 (소득 산정 기준일은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 시 현재 기준으로 산정함)	신혼부부의 경우 본인·배우자·자녀 모두 제출
자산증빙서류 ①, ② 모두 필수 제출	①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서울시 내역 1통 (구청·주민센터) ②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전국 내역 1통 (구청·주민센터) ※ 재산세(토지), 재산세(건축물), 재산세(주택) 3가지 내역 반드시 모두 포함 ※ 과세기준지에 대한과세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발급해야 하며 재산세 납부내역이 없을 시 과세사실없음 으로 발급 ※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는 구청·주민센터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, 민원24 등 인터넷 발급본은 인정하지 않음 ※ 기간설정 : 발급일 현재부터 2년 (자산 산정 기준일은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 시 현재 기준으로 산정함)	신혼부부의 경우 본인·배우자·자녀 모두 제출
혼인관계증명서	※ 예비신혼부부는 세대구성확인서로 대체하여 제출 *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 (고객센터->자료실->3번 글)에 양식 게시	신혼부부의 경우 제출
가족관계증명서	※ 임신 중인 경우 지원 신청일 현재 임신 사실 및 태아 수 확인 가능한 임신진단서로 대체하여 제출	신혼부부의 경우 제출
대리인 신청서류	상기 본인 신청서류 및 본인 인감증명서(본인발급분) + 본인 인감도장 / 본인신분증 / 대리인신분증 / 위임장	대리인 신청 시 제출

유의사항

- ※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
- ※ 청년안심주택(공공임대) 입주자 신청 불가
- ※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과 서울시 청년·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차지원사업 중복 신청 불가
- ※ 접수 후 임대차 계약 내용 변경 불가

청년안심주택